

제 268 호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양 백 식
편집 : 공보실장 김 전 호

1972. 8. 12.

전화 75 - 7834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시보

차 례

서울특별시 시민과광
.....

- 조 례
 - 제 719호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3
 - 제 720호 서울특별시 특수근무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 3
- 규 칙
 - 제 1237호 서울특별시립 여자기술원 설치조례 시행규칙 4
 - 제 1228호 서울특별시 외무축타 규정중 개정규칙 5
 - 제 1239호 서울특별시 아이디어뱅크설치 규정중
개정규칙 5
- 훈 령
 - 제 339호 서울특별시직원제안 규정중 개정규정 6
- 사 령 8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 한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1972년 8월 11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 719 호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우방국가 국민으로서 서울특별시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귀빈에게 수여하는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이하 "명예 시민증"이라 한다)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예 시민증수여) ① 명예 시민증은 별표서식에 의하고 이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수여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명예 시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 3 조 (권리의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 시민증을 받은자가 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6 조 제 2 항의 권리행사 및 의무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

제 4 조 (취소)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 시민증을 받은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 5 조 (위원회) ① 서울특별시 시의회가 성립될때까지 제 2 조 및 제 4 조의 의결을 대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전항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6 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1955.8.15자 서울특별시조례제 80 호 서울특별시공로시민증수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특수근무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1972년 8월 11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 720 호

서울특별시특수근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특수근무수당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외무직공무원실적수당지급구분표중 " 20,000 원 "을 " 52,000 원 "으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7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립 여자기술원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1972년 8월 11일

◎ 서울특별시규칙 제 1237 호

서울특별시립 여자기술원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립 여자기술원 설치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용) 서울특별시립 여자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녀를 입원시킨다.

1. 타보호 기관에서 선도되어 직업 교육을 희망하는자.
2. 무의무탁한 부녀로서 유락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일반불우여성" 다만 정원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용한다.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제3조(입원자의등록) 기술원에 입원하는 자는 시장에게 소정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적성상담) 원장은 기술원에 입원하는 자와 상담하여 신상 파악 및 적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5조(질병의치료) 기술원에 입원하는 자는 검진을 실시하며 검진 결과 성명

기타 경미한 질병은 기술원에 부설된 진료소에서 치료한다.

제6조(퇴원) 원장은 입원자(이하 "원생"이라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퇴원을 명한다.

1. 최소한 6개월이상의 소정의 직업 교육을 마친자로서 생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2. 기타 시장의 직업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교과과정) 원생에게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학과를 교육한다.

제8조(기술교육) 원생에게 자활력 배양을 위하여 원생의 적성에 따라 다음 각호 과정의 기술교육을 실시한다.

1. 자동차 운전과
2. 이, 미용과
3. 양재, 편물과
4. 간호, 보조과
5. 생산과

제9조(생업자금지급) 시장은 자활능력 있어 퇴원하는 자에게 생업자금을 지급할수 있다.

제10조(직업알선) 시장은 소정의 기술을 습득하여 취직을 원하는 자에게는 직업을 알선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보도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서울특별시규칙 제 876 호 서울특별시립 행복원설치조례 시행규칙은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서울특별시 의무축탁 규정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1972년 8월 11일

◎ 서울특별시규칙제 1233 호

서울특별시 의무축탁

규정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의무축탁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의무축탁보수 지급 기준표중

1. 본봉지급 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지급별 구분	과 장			평 의 사			레 지 텐 트				인 턴
	1 호	2 호	3 호	1 호	2 호	3 호	1년생	2년생	3년생	4년생	
월 지 급 액	95,000	87,000	79,000	71,000	63,000	55,000	31,000	33,000	34,000	35,000	28,000

3. 야간응급진료수당 지급 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야간응급진료수당 지급기준
야간 응급진료 업무에 종사하는 과장 및 평의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당 3,000 원 이내의 야간 응급진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에 지급된 야간 응급진료수당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아이디어뱅크 설치 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1972년 8월 11일

◎ 서울특별시규칙제 1239 호

서울특별시 아이디어뱅크

설치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아이디어뱅크 설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중 기획과를 행정과로 한다.

제 2 조의 2 와 제 7 조의 3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7 조의 2 (아이디어심사위원회의설치)

① 제출된 아이디어의 심사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아이디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제 7 조의 3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상임위원 3인 임시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내무국장, 상임위원은 행정과장, 기획과장, 예산과장으로 하고
임시위원은 심사대상 아이디어 관련

과장, 간사는 행정관리계장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④아이디어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8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8 조 (심사) ①제출된 아이디어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구분 심사하고 예비심사는 행정과장이 본심사는 위원회에서 한다.

②예비심사는 별표제 2 호서식의 예비심사표에 의거 본심사에 회부 여부를 심사 결정하고 통과된 것은 즉시 본심사에 부의한다.

③본심사는 별표 제 3 호서식의 심사표에 의거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④필요에 따라 본심사는 서면 심사로 가를할 수 있다.

제 10 조 중 "별표제 2 호"를 "별표제 4 호"로 "별표제 3 호 서식"을 "별표제 5 호서식"으로 한다.

제 11 조 제 1 항 중 보상금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1 급 30,000 원
- 2. 2 급 20,000 원
- 3. 3 급 10,000 원
- 4. 장 려 3,000 원 이내

제 12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2 조 (보고) ①심의결과 채택기로 결정된 아이디어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고 주관과에 이송 실시토록 한다.

②채택 아이디어의 실시지시를 받은 주관과는 이를 즉시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예산상 당해년도에 실시할수 없을 때에는 이를 다음 년도에 실시할 수 있다.

"별표제 2 호"를 "별표제 4 호"로, "별표제 3 호"를 "별표제 5 호"로 하고 별표제 2 호와 별표제 3 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훈 령

◎ 서울특별시훈령제 359 호

서울특별시직원제안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72 년 8 월 11 일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서울특별시직원제안규정중개정규정
서울특별시직원제안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6 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 제 1 호 서식을 별표와 같이 한다.

제 6 조 (제안서의 제출) ①제안을 하고자 하는자는 별표제 1 호 서식의 제안표 2 통과 제안서 5 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안서는 16 절 규격으로 유인물로 하여 제안표와 함께 봉투에 넣어 봉합후 발신인 직, 성명과 근무청을 기재하고 "제안서"라 써서 행정과장 참조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7 조 (제안의접수및처리) ① 접수된 제안은 별표 제 2 호 서식의 제안접수부에 기록하고 별표 제 3 호 서식의 제안 접수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8 조 및 제 9 조를 삭제한다.

제 10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0 조 (심사의기준) ① 제안을 심사할 때에는 실용성, 경제성, 효율성, 창의성에 따라 1 급, 2 급, 3 급으로 등급을 결정한다.

② 각등급에는 미달되어 채택할수 없으나 구상이나 노력면에서 장려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려금을 지급한다.

제 11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1 조 (심사) ① 제안의 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구분하고 예비심사는 행정과장이 본심사는 서울특별시 아이디어 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한다)에서 한다.

② 예비심사는 별표 제 4 호 서식의 예비 심사표에 의거 본심사 회부 여부를 심사 결정한다.

③ 본심사는 위원회에서 별표 제 5 호 서식에 의한 심사표에 의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④ 예비심사에 통과된 제안은 위원

회에 회부하고 심사일 7일전까지 다음 서류를 각위원에게 보내야 한다.

가. 제안원고

나. 제안심사표

다.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 15 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 제 6 호, 제 7 호, 제 8 호 및 제 9 호 서식을 삭제한다.

제 15 조 (보상) ①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채택등급에 의거 다음의 보상금 지급한다.

구 분	단 채	개 인	비 고
1 급	50,000원	30,000원	
2 급	40,000원	20,000원	
3 급	30,000원	10,000원	
상 리	5,000미만	3,000미만	

제 16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6 조 (제안자의대우) ① 채택된 제안의 제출자에 대하여는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장표창을 수여한다.

② 인사관리 담당기관은 채택 제안자 통보에 의거 전항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17 조를 삭제한다.

별표 제 2 호, 별표 제 3 호 별표 제 4 호 및 별표 제 5 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7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h1 style="margin: 0;">사 령</h1>

◎ 1972. 8. 9.

서대문구은평 지방행정주사보 성 무 술
 마포구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행정서기 이 규 영
 한강건설사업소 근무를 명함

행정과 지방행정주사 신 영 진
 총무과 근무를 명함

총무과 지방행정서기 박 애 자
 부녀과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행정서기 조 병 규
 성동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행정서기보 전 만 길
 종로구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행정주사 이 의 백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아동보호소 지방행정주사보 유 강 래
 갯생원 근무를 명함

아동보호소 지방행정주사보 엄 해 승
 도시가스사업소 근무를 명함

도시가스사업소 지방행정주사보이 기 춘
 종로구 근무를 명함

운수지도과 지방행정주사보 지 원 국
 운수행정과 근무를 명함

성북구 지방행정주사 박 인 두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행정주사보 이 진 수
 아동보호소 근무를 명함

운수행정과 지방행정서기 박 창 희
 운수지도과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장